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녀동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138호
- 나. 제 출 자 : 최은하 의원 외 8명
- 다. 제출일자 : 2019년 9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9월 17일

3. 제안이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1999.10.11. 제정 운영하였으나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동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지 않아 청소년동행금지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녀동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9. 9. 10. ~ 9. 16.

6. 검토보고

가. 제안경위

- 동 폐지 조례안은 2019.9.16. 최은하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138호로 2019.9.17.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임.
- 조례 제정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출입제한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 운영된 사례가 없음에 따라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안하였음.

나. 주요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조례제정 현황

- 국회에서는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7.3.7. 「청소년 보호법」⁸⁾을 신규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청소년 보호시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본 폐지 조례안은 1999.10.11. 제정하여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2019.9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9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 강동구 등 16개구가 제정하고 서대문구, 은평구 등 7개구는 미 제정하였으며 강북구·영등포구는 제정 이후 폐지 또는 타 조례에 통합하는 등 자치구의 실정에 맞추어 제정 또는 미 제정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8) 제25조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19.9. 전국 기준)

구 분	전국	서울시					비고
		계	제정	미 제정	폐지	기타 *	
단체 수	95	25	16	7	1	1	*청소년 기본조례

(2) 조례폐지 필요성 검토

-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는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 있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등으로 지정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조례의 근거가 된 「청소년 보호법」 제31조9)에서 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더라도 이의 위반 시 조치사항의 위임근거가 없어 단순 선도이외의 실질적 제재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 운영된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지역 또한 발생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은 인접한 자치구의 지역 현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바,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9)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